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4. 10. 18.(금)

제 42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12
----------	-----

2024. 10. 18.(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11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반주현)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도내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각 시·도에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사무 :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 위탁기간 : `25. 1. ~ `25. 12. (1년)
- 수탁기관 : (사)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지정)
 - 해양수산부에서 방역교육 위탁기관 지정
- 위탁금액 : 9,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산출근거

항목	금액(천원)	산출근거	비고
합계	9,000		
강사료	1,490	- 1급강사: 200,000원(1시간)×1인×3회 - 2급강사: 150,000원(1시간)×1인×3회 - 보조강사: 110,000원(3시간)×2인×2회	
인건비	2,520	- 교육관리자, 전산입력요원, 홍보요원	방역교육 시행규정 별표3
운영비	4,100	- 교육장소 대여, 교재편찬비, 다과비, 사무· 전산용품, 우편료 등	
위탁관리비	890	- 전산관리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총사업비 10% 이내

- 위탁내용 : 도내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수산생물 방역교육 실시(연 2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42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5조(교육실시 등)에 근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 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서는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음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³¹⁾에 따라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에 대한 충북도의회 의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며,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 다만, 법령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이므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³²⁾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31)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2)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재계약·재위탁)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12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12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도내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각 시·도에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사무 :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 추진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42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3조(교육 위탁기관), 제5조(교육실시 등)
- 위탁기간 : 2025. 1. ~ 2025. 12..
- 위탁내용 : 도내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수산생물 방역교육 실시(연 2회*)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42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5조(교육실시 등)에 근거
- 수탁기관 :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지정)
 - 해양수산부에서 방역교육 위탁기관 지정

- 소요예산 : 9,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산출근거

항목	금액(천원)	산출근거	비고
합계	9,000		
강사료	1,490	- 1급강사: 200,000원(1시간)×1인×3회 - 2급강사: 150,000원(1시간)×1인×3회 - 보조강사: 110,000원(3시간)×2인×2회	
인건비	2,520	- 교육관리자, 전산입력요원, 홍보요원	방역교육 시행규정 별표3
운영비	4,100	- 교육장소 대여, 교재편찬비, 다과비, 사무· 전산용품, 우편료 등	
위탁관리비	890	- 전산관리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총사업비 10% 이내

3. 참고사항

가. '25년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추진계획(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42호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2025년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계획(안)

□ 추진목적 및 근거

- 교육목적 :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어업인 방역의식 고취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해수부 고시 제2021-42호)

□ 추진개요

-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1차 교육(북부권)	2차 교육(남부권)
날짜 및 시간	2025년 4월 17일(목) (3시간, 10:00~13:00)	2025년 4월 22일(화) (3시간, 10:00~13:00)
장소	수안보상록호텔 연회장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22 (구, 온천리 292번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구, 괴정리 383)

※ 교육일자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육방법 : 민간위탁(대면교육 3시간)
- 교육대상 : 326개소(양식장 208, 낚시터 115, 집합시설 3)
- 교육예산 : 9,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세부 추진내용

- 방역교육 위탁
 - 위탁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
 - 위탁내용 : 교육홍보, 교육접수, 교육실시, 교육만족도 조사,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배부 등
 - 협약일정 : 2025년 1~3월 중

○ 방역교육 대상자 : 326개소(양식장 208, 낚시터 115, 집합시설 3)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산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수면적(水面積)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 방역교육 내용

※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시간 합계		3
수산물 방역기초	- 수산물 생산의 공중보건 및 방역의 의의와 필요성 - 수산물전염의 이해, 수산물 사체 처리방법 등	1
수산물 질병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생산	-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최신 양식기술 - 수질관리 방법, 친환경 순환여과시스템 운용 방법 등	1
수산물 질병 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	- 수산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물전염병 예방 및 대처요령 - 효과적인 소독실시 방법 및 소독제 사용법 등	1

□ 추진일정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도→해양수산부) : '25. 1월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해양수산부→도) : '25. 1~3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5. 1~3월
- 민간위탁금 지급(9,000천원) : '25. 4월
- 수산물 방역교육 실시(2회) : '25. 4~5월
- 교육만족도조사 및 정산, 결과보고 : '25. 6~12월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이하 “방역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수면적(水面積)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생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2021-42호]

제3조(교육 위탁기관) ① 방역교육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의 강사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